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01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민형배 · 조계원 · 최혁진
김문수 · 김우영 · 이성운
양부남 · 안도걸 · 소병훈
정준호 · 박민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여 음성적인 불법 의료 관행을 뿌리뽑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행법이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쳐, 주변의 소개·알선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 등의 행위까지 규율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모두 끊어내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면허 의료행위(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사항 외에서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도록 소개·알선·유인·중개 또는 광고하는 행위
2.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소·시설·장비·자금·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3. 그 밖에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비자 모집·관리 및 이용요금 수수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운영하거나 해당 업의 운영에 관여한 행위

⑦ 누구든지 자신이 받으려는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7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제8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7조제7항을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3(책임의 감면) 제89조제1항제1호의2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경우
2.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도록 강요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무면허 의료행위(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사항 외에서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도록 소개·알선·유인·중개 또는 광고하는 행위</u> 2. <u>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소·시설·장비·자금·차량을 제공하는 행위</u> 3. <u>그 밖에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비자 모집·관리 및 이용요금 수수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운영하거나 해당 업의 운영에 관여한 행위</u> ⑦ <u>누구든지 자신이 받으려는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u>
<u><신설></u>	

제87조의2(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3의2. ~ 3의4. (생략)

4.·5. (생략)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신설>

<신설>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7조제6항을 위반한 자

3의3. ~ 3의5. (현행 제3호의2 부터 제3호의4까지와 같음)

4.·5.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7조제7항을 위반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0조의3(책임의 감면) 제89조제1항제1호의2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
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관
련 수사에 협조한 경우

2.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무면허 의료행
위를 받도록 강요된 경우